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안전망강화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2021. 5. 25.(화) 석간 *인터넷 2021. 5. 25.(화) 10:00 이후 / 총 5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과 장 김동현 사무관 정장석 사무관 이강욱	044-202-7554 044-202-7563 044-202-7559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,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

–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및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심의·의결 –

□ 정부는 **5월 25일(화) 국무회의**에서 **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안,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**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(시행일: ’21. 6. 9.)

□ 국회는 ‘20.12.8. **「임금채권보장법」**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,

「임금채권보장법」 주요 개정사항

① 근로자가 체당금*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**체당금 수급계좌 제도를 신설**하면서,

*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

- 다만 **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**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때에는 **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**할 수 있도록 규정

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 **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**

ㅇ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’21.5.25. 국무회의에서 **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**했다.

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, **금융기관의 폐업, 업무정지,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**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**현금으로 직접 지급**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**고용노동부 장관에**게 **확인받아야 하는 사항**에 기존의 임금, 휴업수당, 퇴직금 외에 **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**했다.

□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,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**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(시행일: ’21. 6. 9.)

□ 국회는 ‘20.12.8. **「근로복지기본법」**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,

> 🗁 **「근로복지기본법」 주요 개정사항**
>
> ① **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**을 **기금사업에 더 많이 사용**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
>
> ② **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규정

ㅇ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’21.5.25. 국무회의에서 **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**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.

① **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%에서 90%로 확대**했다.

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**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했으며,

- 이 경우, **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%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**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·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**공동기금제도**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**실질소득을 증대**시키고, **복지증진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(임금채권보장법, ☎044-202-7563), 이강욱 사무관(근로복지기본법, ☎044-202-7559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

□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

구분	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
일반 체당금	○ **(지급사유)**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○ **(지급범위)**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○ **(상한액)**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최대 2,100만원('20.1.1.~) 지급
소액 체당금	○ **(지급사유)**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○ **(지급범위)**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○ **(상한액)** 총 상한액은 1,000만원이며, 「임금(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」, 「퇴직급여등」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('19.7.1.~)

□ 지원 절차

구분	절차
일반 체당금	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(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) ▸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(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) ▸ 지급청구서 송부 (지방노동관서 → 근로복지공단) 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(근로복지공단)
소액 체당금	임금청구소송 제기 (근로자 → 법원) ▸ 소액체당금 신청 (근로자 → 근로복지공단) ▸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(근로복지공단) 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(근로복지공단)

참고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및 설립 현황

□ **둘 이상**의 **사업주**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**기금을 조성**하고, 소속 근로자의 **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**을 수행하는 제도 ('15.7.20.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도입, '16.1.21.시행)

○ **(기금 조성)** ①**사업주**의 출연, ②**사업주 외의 자**의 출연(유가증권·현금·부동산 등)

○ **(수혜 대상)** ①**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**, ②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

○ **(설립)** 공동으로 이익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**법인 설립**

- 참여 사업주에 따라 **다양한 형태**로 설립 가능

⇒ 대·중소기업, 원·하청,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·업종·지역별 등

○ **(복지사업)** 근로자의 **재산형성 지원** 및 **생활원조** 등을 위한 사업, **근로복지시설**의 **설치 및 운영** 등의 사업을 수행

【기금법인의 사업】 (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)

- ■ 주택구입·임차자금의 보조,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
- ■ 장학금·재난구호금·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
- ■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·설치 및 운영

  * 기숙사, 사내구판장, 보육시설, 휴양 콘도미니엄, 복지회관, 사택
- ■ 근로자의 체육.문화활동의 지원,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
- ■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
- ■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

○ **(사업재원)** ①기금 운용을 통한 **수익금**, ②**해당 회계연도 출연금** (50% 또는 80%), ③일정 요건 충족 시 **기본재산**의 일부(20% 또는 30%)

□ **(설립 현황)** '19년을 기점으로 **'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**

[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] ('20년 12월말 기준)

(단위: 개소)

계	설립 연도별					형태별						
	'16	'17	'18	'19	'20	원하청	협력업체	동종업종	지역	계열사	가족회사	기타
262	14	17	18	31	**182**	14	60	109	13	15	5	46